

송지우

물질적 재화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상태를 ‘완전 평등’이라고 하자. 완전 평등을 노리는 게 적절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완전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더, 누군가에게는 덜 주는 불평등의 상태가 정당한 듯 보인다.

언제, 왜 이러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답은 ‘불평등이 공정한 경우’일 지 모른다. 가령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거나 더 좋은 기회를 누리는 것은 공정하고 그러므로 정당한 불평등이라는 식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경쟁이 공정한지 알아야 한다. 현대 정치철학에서 어느 정도 자원을 얻어올 수 있다.

주요 논의내용

- 절차적 공정과 불평등의 정당화
- 공정한 협동체로서의 사회
- 불평등이 공정의 기반을 무너뜨릴 때

‘불평등의 세 단계 정당화’(three-level justification for inequality) 체계를 제시한 철학자 T.M. 스칸런(T.M. Scanlon)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겪는 어떠한 불평등에 이의제기를 할 때, 그가 겪는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점을 보이려면 다음 세 단계의 정당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제도적 정당화: 해당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제도의 존재가 정당하다.
2. 절차적 공정성: 다른 사람들은 이득을 얻고 이의제기자는 그러지 못하게 된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했다.
3. 실질적 기회: 이의제기자가 이 과정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과정에서 더 잘하지 못한 데에 부당함이 없었다.

이를 선발과정에 적용하면 희망자 가운데 일부만 선발하는 제도가 먼저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실제 선발 과정이 절차적 공정성을 지켰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때 절차적 공정성은 제도적 정당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도의 존재 근거와 무관한 요건이 선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

적절한 제도적 정당화에 기반하여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졌더라도 선발 경쟁에 제대로 참여할 실질적 기회가 없었다면, 그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 실질적 기회 보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꽤 까다로운 문제이다. 대표적인 실질적 기회 보장 원칙인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공정한 기회균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원칙’에 따르면 재능과 의욕이 같다면 가정 형편이 어떻든 같은 교육 기회와 경제적 기회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게다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만으로도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애초에 어떤 일에 대한 재능이나 그에 도전하려는 의욕조차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 문화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므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제대로 적용할 조건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처럼 실질적 기회 보장을 판단하는 데에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위원. 정치철학, 법철학, 인권학의 교집합에 있는 문제들을 주로 연구하며 T.M. 스칸런의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를 번역 중이다.

세 단계 정당화 체계를 검토하다 보면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의미의 공정은 넓은 의미의 공정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공정을 가장 넓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고민한 현대 철학자인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정의관을 제시한다. 사회를 하나의 협동체, 즉 각자 저마다의 가치관과 이해관심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각종 이득과 부담을 만들어내는 체계로 본 롤스에게 공정은 사회협동 자체의 이득과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다. 롤스는 정의로운 협동체만이 구성원의 자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의로운 사회가 공정한 사회협동체라면,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롤스주의 철학자 토미 셸비(Tommie Shelby)는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tolerable injustice)의 기준을 제시한다. 정의로운 사회가 공정한 사회협동체라면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는 이들이 그럼에도 협동체의 규칙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여전히 시민적 책무를 다하면서 제도 안에서 제도 개선을 시도해야 마땅한 범주, 즉 시민적 참을성의 임계점을 규정한다. 그 임계점은 적어도 세 가지만은 지켜지는 지점이다. 우선, 모두의 시민·정치권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된다. 둘째로, 모두가 생계를 위한 최저 수준의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다. 끝으로, 비록 공정한 기회균등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자기개발과 물질적 안정을 성취할 충분한 기회는 제공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불평등과 공정은 서로 맞물리고 이어지는 관계이다. 넓은 의미의 공정은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폭넓게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여러 방향으로 불평등을 제한해야 한다. 극심한 불평등은 공정한 사회 협동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사회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은 많은 경우 공정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가 기본적인 공정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다.

불평등의 제한이 공정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좀 더 일반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다. 불평등이 언제, 왜 나쁜가에 대한 교훈이다. 사람들은 때로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는 상황은 그 자체로 나쁘고 그래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앞서 세 단계 정당화 체계를 논의하며 예로 보았듯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제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많은 경우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피해야 할 다른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쁘다. 불평등을 제한할 이유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앞서 보았듯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같은 실질적 기회 확보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다. 스캔런은 이와 함께 부의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부유한 이들이 정치 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공정성이 무너지고 법과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한 협동체로서의 사회는 모두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면, 이러한 자유 실현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심각한 물질적 불평등은 제어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 생계를 위해 타인의 강압과 지배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나, 더 나은 처지를 희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협동체에서 당신의 몫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민적 참을성의 임계점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 사회에서 보이는 불평등의 종류와 정도는 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 즉 참아낼 만한 수준의 불공정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일시
2022년 4월 25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